
국유재산 로케이션(촬영장소) 활용 가이드라인

2024. 7.

목 차

| | |
|-----------------------------|----|
| 1. 목적 | 1 |
| 2. 국유재산의 정의 | 1 |
| 3. 촬영장소 사용 신청 | 1 |
| 4. 촬영 승인 절차 및 기준 | 2 |
| (1) 승인 절차 | 2 |
| (2) 승인 기준 | 3 |
| 5. 촬영장소 사용료 | 4 |
| 6. 기타사항 | 5 |
| [붙임 1] 지역별 영상위원회 연락처 | 6 |
| [붙임 2] 대부계약서(참고용) | 7 |
| [붙임 3] 대부계약 특약사항(안) | 11 |
| [서식 1] 국유재산 대부 신청서 | 12 |
| [서식 2] 국유재산 촬영 승인 신청서 | 14 |
| [서식 3] 서약서 | 15 |
| [서식 4] 시설 사용 계획서 | 16 |
| [서식 5] 대부계약 신청 취소 신청서 | 17 |

1 목 적

- 본 가이드라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에서의 6개월 미만 영화·드라마 등 영상물 촬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국유재산의 정의

- 본 가이드라인에서 ‘국유재산’이라 함은 캠코가 관리하는 촬영 장소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건물 및 그 부속물 일체를 말함

3 촬영장소 사용 신청

□ 신청 방법

- 「캠코국유재산포털」(gpminwon.kamco.or.kr*)을 통해 신청
 - * 국유재산 조회 > 맞춤형 재산 조회 > 촬영장소
- 필요 서류(아래 참조) 구비하여 촬영 신청 전 지역 내 영상위원회(이하 “영상위”)와 일정 등 사전 협의 필수(<붙임 1> 연락처 참조)

□ 필요 서류

- ① 국유재산 대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② 촬영 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③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 ④ 시설 사용 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 사전답사 활용하여 신청인이 직접 작성·제출

⑤ 촬영 계획서(자유 양식, 아래 사항* 해당 시 반영)

- * 1) 대형 장비(크레인, 강우기 등) 반입 필요 → 진출입 가능 여부 현장 확인
- 2) 시설 내 임시 미술세팅 필요 → 세트 조성 방안 제출
- 3) 화재, 살수 장면 등 안전문제 발생 우려 → 안전사고 예방 방안 제출

⑥ 영상위원회 촬영 협조 요청 공문*(수신처 : 캠코)

- * 신청인이 영상위와 사전 협의 완료 후 영상위로부터 전달받아 제출

⑦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등

□ 신청 기한

- 필요 서류 구비 및 영상위 사전 협의 완료 후 재산 사용 개시 최소 20일 전까지 신청
- 촬영일정이 급박하게 결정(변경)되어 신청기한 준수가 어려운 경우 영상위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 확인

4 촬영 승인 절차 및 기준

(1) 승인 절차



| 구분 | 주체 | 내용 |
|---------------|----------|---|
| ① 촬영 사전 협의 | 제작사 | 촬영 희망 장소 지역의 영상위*에 필요 서류 제출 및 협의(사전답사 포함) |
| ② 적합 여부 검토 | 영상위 | 촬영 적합 여부 검토(서류 포함) → 적합 시 캤코 앞 촬영 협조 요청 공문을 제작사에 발급 |
| ③ 촬영 승인 신청 | 제작사 | 「캤코국유재산포털」을 통해 대부 신청 (영상위 공문 등 필요 서류 첨부) |
| ④ 촬영 승인 검토 | 캤코 | 영상위 검토 내용 및 구비 서류 검토 |
| ⑤ 촬영 승인 결과 안내 | 캤코 | 영상위 및 제작사에 승인 여부 통보 |
| ⑥ 대부료(사용료) 납부 | 제작사 | 캤코에 대부료(사용료) 납부 |
| ⑦ 대부계약 체결 | 캤코 및 제작사 | 대부료 납부 확인 후 대부계약 체결 (대부계약서 직인 날인하여 캤코로 송부) |

* <붙임 1> 참조, 영상위 없는 지역은 캤코에 직접 문의

[2] 승인 기준

□ 승인 요건

- (사용 기간) 현장에서 촬영 전 준비와 촬영 후 원상회복 기간을 포함하여 대부기간 설정
- (상태 변경) 건물구조 변경 등 영구적 상태 변경 불가, 미술세팅 (목조 가벽 등) 및 소품 배치는 사전 협의하여 가능하나 원상회복 필수
- (가설건축물* 설치)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설치 희망 시 대부 계약 전 캤코 승인** 필요하며 대부계약 종료 전 원상회복 필수
 -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 ** 승인 신청 시 원상회복에 관한 공증각서 및 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
- (기타) 본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 및 캤코 내부 규정 준용

□ 제한사항

- 안전상의 문제나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래 사항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촬영 제한(대부계약 해지 가능)
 - 시설물 파손이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 대형 확성기, 스피커 등 사용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

□ 유의사항

- 건물 내 촬영 시 발전차 등을 활용하여 자체전력 수급 필요 (단전·단수 상태)
-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촬영장소에 소화기(3.3kg 이상) 구비 필수
- 촬영을 위한 일시적 재산상태 변경 시 원상회복 필수이며, 촬영 중 발생한 폐기물은 반드시 수거해야 함(대부 신청인 책임)
- 촬영 과정상 일어나는 안전사고, 시설물 파손 등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대부 신청인(대부받는 자)에게 있음
- 신청인은 대부계약서, 서약서 및 본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5 **촬영장소 사용료**

□ 대부료(유상 / 대부 신청인 부담)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등에 따라 일 단위 계산(현장에서의 촬영 준비 및 촬영 후 원상회복 기간 포함)
 -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소상공인은 대부료 인하(2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 추가 경감 정책 시행중)

□ 납부계좌

- 캠프코 지역본부에서 안내(가상계좌 사용)

□ 촬영기간 연장 및 취소

- (촬영기간 연장) 기존 대부기간을 초과하여 촬영해야하는 경우 영상위·캠코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일정 조율 → 추가기간에 대한 새로운 대부계약 체결 필요
 - (촬영 취소) 대부료 납부하였으나 '대부 시작일 이전'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부 신청을 취소해야하는 경우, 대부 시작일 최소 3영업일 전 영상위·캠코에 신청서(서식 5) 제출 → 대부료 환급
- ※ [참고] '대부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신청해야하며, 캠코는 해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후 해지 → 해지일 기준 과납 대부료 반환

6 기타사항

- (크레딧)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촬영한 영상물 크레딧에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촬영장소 지원'한 내용 삽입
- (촬영사진) 캠코 또는 영상위 요청 시 대부 신청인은 출연자 등 동의를 거쳐 촬영장면이 담긴 메이킹 및 스틸사진 제공
 - 제공된 메이킹 및 스틸사진은 캠코·영상위가 비영리 목적의 홍보물로 활용 가능

- 붙임 1. 지역별 영상위원회 연락처 1부.
2. 대부계약서(참고용) 1부.
3. 대부계약 특약사항(안) 1부.

- 서식 1. 국유재산 대부 신청서 1부.
2. 국유재산 촬영 승인 신청서 1부.
3. 서약서 1부.
4. 시설 사용 계획서 1부.
5. 대부계약 신청 취소 신청서 1부. 끝.

붙임 1

지역별 영상위원회 연락처

| | 지역 | 팀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
| 수도권 | 서울영상위원회 | 로케이션팀 | 02-777-7092 (341) | sfc7273 @seoulfc.or.kr |
| | 경기콘텐츠진흥원 | 영상산업팀 | 032-623-8071 | dhkim @gcon.or.kr |
| | 인천영상위원회 | 촬영지원팀 | 070-4260-6415 | bkkim01 @ifc.or.kr |
| 강원권 | 강원문화재단 (강원영상위원회) | 영상지원팀 | 033-240-1382 | gwfilm8928 @naver.com |
| | 춘천시영상산업 지원센터 | 영상산업 지원팀 | 033-245-6333 | hjs10231 @gica.or.kr |
| 충청권 | 대전정보문화산업 진흥원(대전영상위) | 영상산업 육성팀 | 042-479-4183 | shpark @dicia.or.kr |
| | 제천문화재단 (청풍영상위) | 영상 미디어팀 | 043-645-4995 | cevas1 @jccf.or.kr |
| | 청주시문화산업 진흥재단(청주영상위) | 콘텐츠 융합팀 | 043-219-1278 | shlee @cjculture.org |
| | 충남정보산업 진흥원(충남영상위) | 영화드라마 사업국 | 041-590-0922 | fastpaws @ctia.kr |
| 전라권 | 광주정보문화산업 진흥원 | 영상영화 사업국 | 062-350-9340 | hyk @gicon.or.kr |
| | 전주영상위원회 (전북 전체 담당) | 촬영지원팀 | 063-903-0421 | jfclt @naver.com |
| | 전남영상위원회 | 로케이션팀 | 061-744-2272 | location @jnfc.or.kr |
| 경상권 | 부산영상위원회 | 촬영지원팀 | 051-720-0333 | sungyoung @filmbusan.kr |
|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대중문화 산업팀 | 055-230-8820 | libero @gcaf.or.kr |
| 제주 |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 문화산업팀 | 064-735-0622 | chae2836 @ofjeju.kr |

※ 세종, 충북(청주·제천 제외), 대구, 경북, 울산 지역은 캠프에 문의(051-794-4231)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_____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시부터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시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금 _____ 원(대부료 금 _____ 원을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대부보증금은 금 _____ 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 대부료를 한꺼번에 내야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내야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 회 차 | 분납금 | 이 자 | 납부기한 | 회 차 | 분납금 | 이 자 | 납부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부기간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고시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하여야 하며, 통상의 수선에 드는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대부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수·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대부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대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_____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부담한 보험료를 대부받는 자가 내야 한다.

제7조(대부받은 자의 행위 제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원상변경
3. 대부재산에 시설물의 설치

제8조(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대부받는 자가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3. 대부받는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대부받는 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 등에 따라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5. 대부받는 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6. 대부받는 자가 대부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경우
7. 대부받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대부받는 자가 대부자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9. 대부받는 자가 대부자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10. 대부재산을 대부받는 자 외의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11. 그 밖에 대부받는 자가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보상) ① 제8조의 경우에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 제1호·제3호·제4호·제7호의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가 과납한 금액을 반환하며, 제8조제1호의 경우에는 그 밖에 대부받는 자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보상액은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권리금과 장래의 기대수익 등은 보상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청구) 이 계약기간 중 대부받는 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대부받는 자가 과납한 금액을 반환한다. 이 경우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대부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하여 대부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대부계약의 갱신 신청) 대부기간이 끝난 후에도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대부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대부받는 자의 손해배상 책임) 대부받는 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대부받는 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대부재산의 제3자 매각) ① 대부재산을 대부받는 자 외의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1개월 전까지 대부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대부재산이 대부받는 자 외의 제3자에게 매각되었을 때에는 이 계약은 해지되며, 이에 대하여 대부받는 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 등의 징수) ① 대부받는 자가 대부기간의 만료 또는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대부자가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며, 대부받는 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부자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대부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대부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가 낸 대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받는 자가 내지 아니한 대부료, 공과금 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③ 대부받는 자가 제3조의 대부료 및 제1항의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징수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퍼센트

제16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7조(시효이익 포기) 대부받는 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연고권 및 시효이익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특 약 사 항

제0조(가설건축물 축조의 금지)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설 건축물이나 정화조 등의 시설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한 경우 대부자는 즉시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대부받는 자는 즉시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대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0조(전자우편에 의한 송달) 대부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발송하는 각종 통지는 대부받는 자의 동의하에 대부받는 자의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기로 한다. 이 경우 대부받는 자의 위 전자우편주소에 통지가 도달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0조(명도집행시 특칙)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절차 개시 시 대부재산에 존재하는 유체동산 및 시설물은 대부받는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0조(대부재산의 점유종기일) 대부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만료로 대부계약이 종료되어 대부받는 자가 대부재산을 자진명도할 경우,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에게 서면으로 자진명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자의 직원이 대부받는 자로부터 대부재산의 잠금장치를 인수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재산의 점유가 대부자에게 이전이 완료된 때 대부받는 자의 점유가 종료된 것으로 한다.

제0조(안전관리의무) 대부재산에 대한 안전관리는 대부받는 자의 책임이며, 대부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대부받는 자가 입증하지 않는 한 화재, 재난 및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한 대부재산 내에서 대부받는 자, 대부받는 자의 사용자 또는 대부받는 자의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대부자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0조(위험에 대한 사전통지) 대부재산의 노후, 기능상실 등으로 인하여 대부 재산이 붕괴 또는 멸실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고, 대부받는 자가 고의나 과실로 사전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대부자는 대부재산의 붕괴 또는 멸실 가능성 등에 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것으로 본다.

제0조(대부재산 출입 및 그 부수조치에 대한 사전동의) ① 대부자가 대부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대부자의 직원 ('직원의 보조자'를 포함한다)은 대부계약 기간 및 대부계약 종료 이후 대부재산에 출입할 수 있고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대부받는 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②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의 직원의 출입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대부받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대부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기 계약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무단전대 행위나 불법건축물 등의 설치를 하지 않겠음(자필)

20 년 월 일

| | | | | | | |
|--------|----------|---------------|--|------|-----|--|
| 대 부 자 | 국(기획재정부) | 관리청 (수탁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위 대리인 ○○○○지역본부장 ○○○ (인) | | | |
| | | | (주소) | | | |
| 대부받는 자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이메일 | |
| | (인) | | | | | |

* 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직위·성명 기재

[별지 제1호서식]

국유재산 [] 대부 [] 매수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 | | | | | |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주소 | | | | | |
| | 전화번호 | 이메일(e-mail) | | | | |
| 대부료 환급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 | | | |
| 신청내용 | 재산의 표시 | | | 신청면적 (㎡) | 용도 | 대부기간 |
| | 소재지 | 지목 | 공부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위 재산의 []대부, []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한국자산관리공사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아래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
|----------------------------|--|
|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 직원의 확인사항 | 1.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3.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은 우리 공사에서 행정정보 조회 가능하나, 중소기업확인서는 행정정보 조회 불가하므로 별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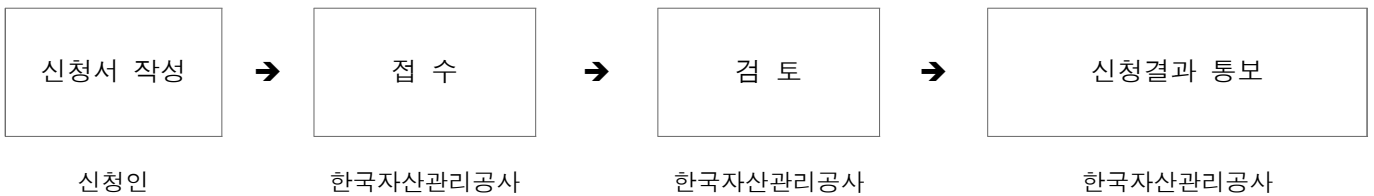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대부료율 안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구 분 | 원칙 | 예 외 | | | | | | | |
|-------|----|----------|-----------|------|----------|-------------|------|------|---------|
|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 목 적 | - | 경작/어업/임업 | 주거(기초수급자) | 행정 | 공무원 후생목적 | 사회복지/종교단체 등 | 소상공인 | 지자체 | 사회적기업 등 |
| 대부료율* | 5% | 1% | 2% (1%) | 2.5% | 4% | 2.5% | 3% | 2.5% | 2.5% |

* 모든 대부료율은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규정

처 리 절 차



※ 신청재산에 대한 확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신청결과 통보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유 의 사 항

1. 2인 이상 공동매수는 신청인을 연명하여 작성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뒤쪽 빈칸에 적습니다.
2.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 또는 매수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대부 또는 처분될 수 있습니다.
3. 국유재산의 처분승인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의사를 철회한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제11항에 따라 감정평가 비용 및 국가가 부담할 측량 비용은 매수신청인이 부담합니다.
4. 신청서 접수 후 민원신청 관련 유의사항이 안내된 접수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우편접수 시 미발급). 또한, 익일 카카오킬링톡 서비스를 통해 접수완료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신거부 시 미발송).

| 국유재산 촬영 승인 신청서 | | | | | | |
|--|--|------|-----|--|--------------|--|
| 사용인 (개인 및 법인) | 성 명 (법인명) | | 작품명 | | | |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직위 | | 연락처 (휴대폰) | |
| | 주 소 | | | | | |
| | E-mail | | | | | |
| 촬영일시 | | | | | | |
| 촬영장소 | | | | | | |
| 세부장소 | <i>시설 사용 계획서 첨부(재산 전체 이용 시 작성 불필요)</i> | | | | | |
| 촬영인원 | | 촬영장비 | | | | |
| 촬영내용 | <i>필요 시 별도 첨부</i> | | | | | |
| <p>※ 신청 시 유의사항</p> <p>1. 가설건축물 설치 관련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영구시설물은 축조 금지)</p> <p>2.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은 촬영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음 - 시설 사용 전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 후 사용 - 시설 사용 후 원상복구 | | | |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신청인* (직인必)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 법인의 경우 대표자(법인명 및 대표자 직위·성명 기재)</p> | | | | | | |
| <p>※ 첨부서류 : 서약서, 시설 사용 계획서, 촬영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p> | | | | | | |

서 약 서

신청인 본인(법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에서 촬영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법인)은 캠코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에서의 영상물 등 촬영에 있어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 및 「국유재산 로케이션 활용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하겠습니다.
2. 캠코와 현장에 입회한 영상위원회 지시에 우선적으로 따르며, 승인되지 않은 장소 진입과 촬영은 금지하고 허용된 장소에서만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3. 촬영에 임하는 모든 스태프는 시민 및 촬영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준수하겠습니다.
4. 촬영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민원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5. 촬영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민원에 대해 전적으로 본인(법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6. 촬영에 필요한 미술세팅을 하는 경우 촬영 종료 후 원상회복하며, 촬영 중 발생한 폐기물은 모두 수거하겠습니다.(미처리 시 변상금 부과 등 조치 가능)
7. 촬영으로 인해 시설물이 훼손·파손되는 경우 원상회복하겠습니다.
8. 본 서약사항과 사전 협의사항(현장에 입회한 영상위 지시사항 포함)을 위반하는 경우 촬영 승인이 즉각 취소되는 것에 동의하며, 즉시 원상회복 및 폐기물 수거 후 퇴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必)

* 법인의 경우 대표자(법인명 및 대표자 직위·성명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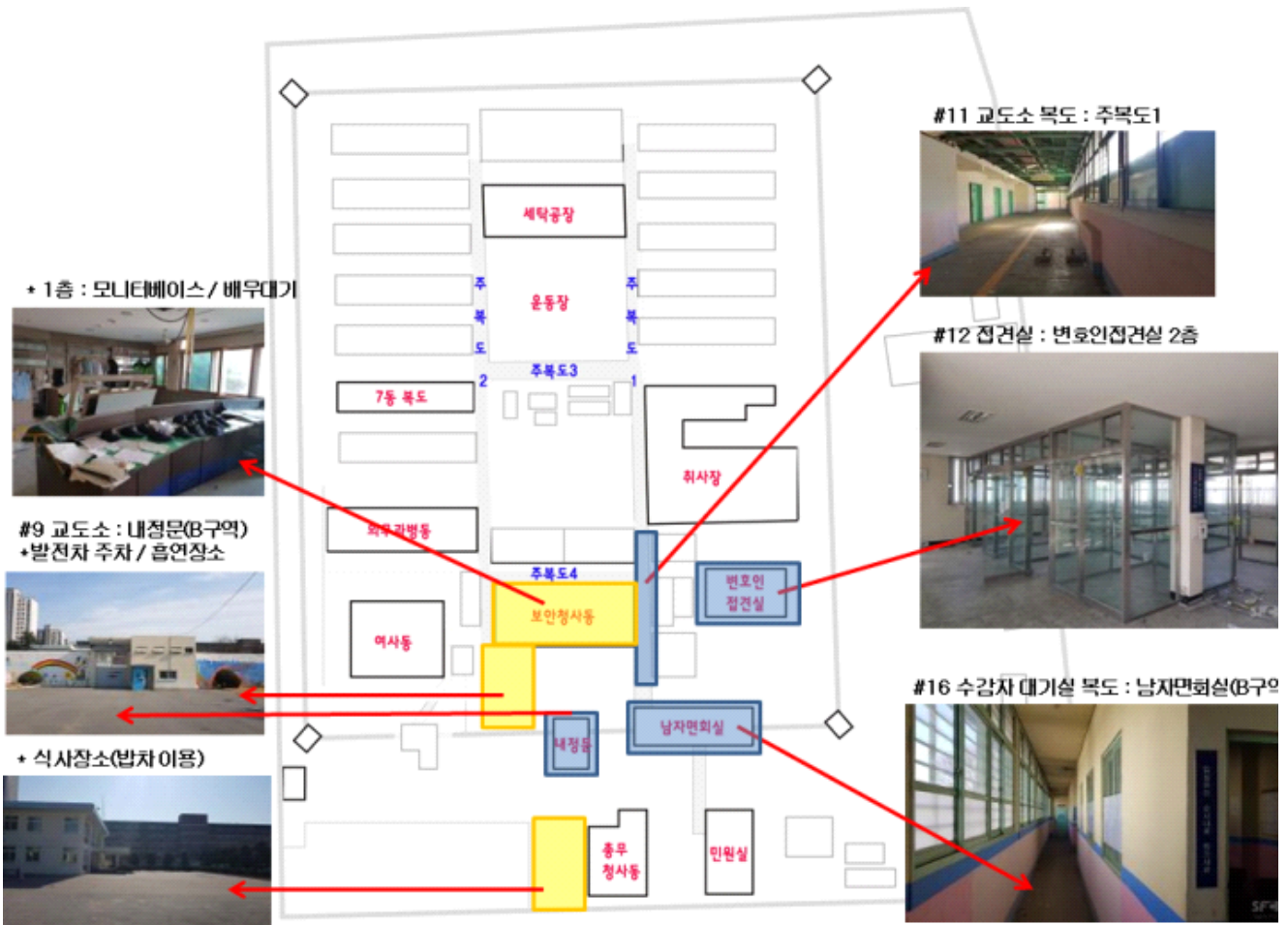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시설 사용 계획서

- ※ 표시하지 않은 구역은 미술세팅 등 임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 “무단 촬영으로 간주되어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음
- ※ ‘촬영 승인 신청서’ 및 ‘서약서’의 내용에 따라 “폐기물 미처리, 재산 현상변경, 재산 훼손·파손 시 변상금 부과 또는 비용 청구” 가능

< 舊 성동구치소 도면(예시) >



▪ 사용 구역 표시

- 표시한 공간에서만 촬영 가능(순번과 공간 명칭 기입*)

* (예시) ① 접견실, ② 보안실, ③ 복도1, ④ 복도2, ...

- 사전답사(헌팅) 시점 사진 사용(원상회복 확인용)

- 단순 소품 배치가 아닌 세트팀(미술팀) 참여 시 미술세팅 시안 첨부

[별지 제5호서식]

국유재산 대부계약 신청 취소 신청서

| | | |
|-------|----|------|
| 해지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관련 국유재산 | 재산의 표시 | | | 신청면적 (㎡) | 용도 |
|------------|--------|----|---------|-------------|----|
| | 소재지 | 지목 | 공부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소 신청 사유 | |
|-------------|--|

| | | | |
|--------------|-----|------|-----|
| 대부료 환급 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 명의자 |
| | | | |

위 국유재산 대부계약 신청에 대해 취소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법인의 경우 대표자(법인명 및 대표자 직위·성명 기재)

한국자산관리공사 귀하

| | | |
|------|-----------------|-----------|
| 첨부서류 | 대부료 환급계좌 사본 1통. | 수수료 없음 |
|------|-----------------|-----------|